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3602       |
| 의 퇴 인  | 주호영 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11. 12. |
| 추 계 번호 | 24C3532       |

#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특례를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.1조원(연평균 2.2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조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특례 적용(안 제5조의2) | 1.1  | 2.2  | 2.4  | 2.6  | 2.8  | 11.1 | 2.2 |

주: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경우 재정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                 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5조의2(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) | (제1항제1호)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30%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2026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함<br>(제1항제2호)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50%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함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)                  | ×   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5조의2(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) | ○    | ○ 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조정하고, 저소득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그러나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경우 재정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지출 감소분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  - 현 시점에서는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 조정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
    - 또한, 안 제3조제3항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음
- 따라서, 본 추계서는 저소득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특례를 적용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에 한정하여 추계
  -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    - 기초연금급여 외에 제도운영비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대상자 수)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<sup>1)</sup>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상자 비율, 수급률, 대상자 유형별(국민연금 수급 여부, 가구 유형, 소득감액 적용 여부 등) 수급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

1) 2023년 12월 공표 통계

- 대상자 비율은 70%를 적용하고, 수급률 및 대상자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은 2021년~2023년의 평균 비율을 적용
- 대상자 비율 70%를 적용한 수급 대상자 수는 2025년 736.0만명에서 2029년 876.5만명으로 증가 전망

[표 2]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수급 대상자 수

(단위: 만명)

| 구 분           | 2026 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2030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65세 이상 노인(A)  | 1,112.5 | 1,159.7 | 1,212.5 | 1,252.1 | 1,298.0 |
| 수급 대상자 비율(B)  | 70%     | 70%     | 70%     | 70%     | 70%     |
| 수급 대상자 수(A×B) | 778.8   | 811.8   | 848.8   | 876.5   | 908.6   |

자료: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」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소득하위 30% 이하와 소득하위 30% 초과 50%, 소득하위 50% 초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‘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’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말 기준 수급 실적을 해당 구간별로 나누어 산출한 유형별 수급자 수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
  -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말 기준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내에서의 소득 계층을 나누어 기초변수를 산출<sup>2)</sup>

□ (현행 제도에 따른 연금액) 2024년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4.10. 경제전망 기준)<sup>3)</sup>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

- 부부 동시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은 20% 적용, 가구 유형(단독·부부1인·부부2인)에 따른 소득역전 방지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비율은 2021년~2023년의 평균 감액 비율 적용

2)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 소득하위 70%의 하위 42.86%는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30%에 해당하고, 소득하위 70%의 하위 71.43%는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50%에 해당하므로,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말 기준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내에서의 소득 하위 42.86% 이하, 42.86% 초과 71.43% 이하를 구분하여 기초변수를 산출

3)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라 지급연도 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<br>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%) | 2.5  | 2.1  | 2.0  | 2.0  | 2.0  |

- (개정안에 따른 연금액) 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30%에 대한 기준연금액은 2026년부터 40만원으로, 소득 하위 50%에 대한 기준연금액은 2027년부터 40만원으로 설정하고, 매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2024.10. 경제전망 기준)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
- 소득 구간별 감액비율은 2021년~2023년의 평균 감액 비율 적용

[표 3]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정치

(단위: 원)

| 구 분          | 2026 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2030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기준연금액        | 350,387 | 357,395 | 364,543 | 371,834 | 379,270 |
| 소득 하위 30% 이하 | 400,000 | 408,000 | 416,160 | 424,483 | 432,973 |
| 소득 하위 50% 이하 | 350,387 | 400,000 | 408,000 | 416,160 | 424,483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특례를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.1조원(연평균 2.2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조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   | 연평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현행제도 유지 시 기초연금<br>총재정소요(A) | 29.0 | 30.7 | 32.7 | 34.4 | 36.4 | 163.2 | 32.6 |
| 개정안에 따른 기초연금<br>총재정소요(B)   | 30.0 | 33.0 | 35.2 | 37.0 | 39.2 | 174.4 | 34.9 |
| 소득 하위 30%                  | 15.1 | 16.1 | 17.1 | 18.0 | 19.1 | —     | —    |
| 소득 하위 30%<br>초과 50% 이하     | 8.1  | 9.6  | 10.3 | 10.8 | 11.4 | —     | —    |
| 소득 하위 50% 초과               | 6.9  | 7.3  | 7.8  | 8.2  | 8.7  | —     | —    |
| 추가재정소요(B-A)                | 1.1  | 2.2  | 2.4  | 2.6  | 2.8  | 11.1  | 2.2  |

주: 제도운영비를 제외한 기초연금급여(국비·지방비 합산)에 대한 재정소요만 추계

## 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 V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assembly.go.kr |